

		시 민				
		주무관	도시계획과장	도시관리정책관	도시계획국장	행정2부시장
문서번호	도시계획과-14827	제 조 종합계획팀장				
결재일자	2013. 10. 16.					
공개여부	비공개					
방침번호	행정2부시장 방침 제315호					

서울 미래 도시계획 100년의 元年



# 「도시계획 정책자문단」 개선 방안

2013. 10.



도시계획국  
(도시계획과)

## 사전 검토 항목

:::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● 전 문 가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음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도시계획조례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● 종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타 자 원 의 활 용	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● 관 계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
# 「도시계획 정책자문단」 개선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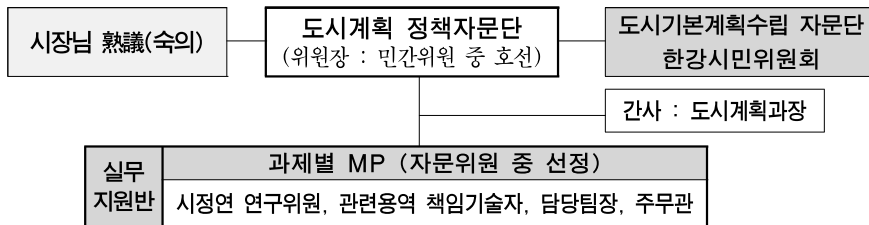
2012년 구성·운영 중인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운영평가 및 관련 의견 등을 반영하여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함

※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포(‘13.10.4)-정책자문단 관련 규정 신설

## I 운영 개요

### □ 구 성 (20명 내외)

- 위원장 : 외부위원중 호선
  - 외 부 : 도시계획, 도시경관, 도시설계 등 도시계획분야 특화된 전문가
  - 내 부 : 도시계획국장, 도시관리정책관 (간사 : 도시계획과장)
- ※ 도시계획위원회 : 도시계획, 언론, 인문사회, 법조계, 시의회 등 각 분야로 구성



※ 실무지원반 : MP(총괄), 시정연 연구위원, 용역관계자, 담당팀장, 전문가

### □ 운영결과

- 정책자문단 본 회의 개최 현황
  - 위촉식 및 1차 자문회의 개최(‘12. 8. 16) 이후 총 6차 자문회의 개최
- 분과자문단 개최 현황
  - 도시계획 현장 분과 (6회 개최), 한강변 관리방안 분과 (7회 개최) 용산공원 관리방안 분과(8회 개최)

## II 평가 및 개선방향

### □ 운영 평가

- 정책자문의 연속성·전문성 확보
  - 도시계획과 관련된 위원 구성 및 정기운영을 통해 정책의 연계성, 위원회간 논의의 연속성 유지
- 주요 이슈에 대한 대안 마련
  - 개별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 해당분야 특화된 도시계획 전문가를 중심으로 과제별 집중논의 및 대안 도출
- 관련근거마련, 전문가 구성 등 운영개선 필요성 제기
  - 시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 했으며, 내부적으로도 전문가 구성 확대 등 운영개선 필요성이 제기 됨

### □ 개선방향

- 정책자문단 구성 개선 및 지원기능 강화
    - 해외전문가, 문화, 미래,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참여
    - 시의원 참여를 통해 시의회와 소통 강화
    - 자문단 지원을 위한 실무 지원 기능 강화
  - 운영규정 등 관련기준 체계화
    -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문단의 운영 규정 명문화
- ※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‘13년도 예산심의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조치 필요
- ▶ ‘13년도 자문단 운영비(164백만원)는 관련근거 마련후 집행 가능

## □ 그간 추진경위

- '12.8.16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」 자문위원 위촉
- '12.8~13.3 정책자문단 운영 총 32회(전체 8, 분과 24)
  - 도시계획 현장, 한강변 관리방안, 용산공원 관리방안 3개 분과자문단 운영
- '13.1.22 정책자문단 운영 개선안 마련(행정2부시장 방침)
  -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(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구성·운영)
- '13.2. 6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결과
  - 위원회(자문단 포함) 설치는 조례로 설치 가능
- '13.6. 5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개선(안) 마련(행정2부시장 방침)
  -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및 자문단 구성·운영 개선방안 마련
- '13.6.14 자문단 설치·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의원발의(이경애 시의원)
- '13.9. 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임위 의결
- '13.9.13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
- '13.9.27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
- '13.10.4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포 ⇨ 첨부 4

## Ⅲ 주요 개선사항

### 1. 정책자문단 구성 및 지원기능 강화

#### □ 現 자문단 구성 (정원 : 20명)

- 위원장 : 외부위원 중 호선 - 김기호(시립대 교수)
- 외 부 : 도시계획, 도시경관, 도시설계 등 도시계획분야 특화된 전문가 20명
  - 도시계획(8), 건축(4), 교통(2), 업계(3), 환경·미래학·여성학(3)
- 내 부 : 행정2부시장, 도시계획국장, 도시관리정책관, 도시계획과장(간사), 종합계획팀장(서기)

#### □ 개선방향

-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대표성 강화
  - 도시계획·건축 분야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, 인문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의원, 공신력 있는 관련 학회·협회 소속 전문가 등 대표성 강화
-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연계성, 위원회간 논의의 연속성 고려
  - 도시계획위원회, 도시건축공동위원회, 2030 서울플랜 수립 자문단 등
- 주요 현안이슈별 분과자문단과 실무지원반을 구성·운영하여 심도있는 조사, 연구 등 병행 실시

#### □ 자문단 구성 원칙

-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, 일관성 등을 감안 現 자문위원 가급적 연임
- 시의원 참여를 통한 시의회와 소통 강화
- 인문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추가 위촉
- 업체 관계자 및 사임의사 표명 위원 해촉

□ 자문단 구성(안) ◀ 첨부 1

구 분	인원	비 고
現 자문위원 구성 현황	20	- 도시계획(8), 건축(4), 교통(2), 업계(3), 환경(1), 미래학(1), 여성학(1)
現 자문위원 중 해촉	5	- 사임의사 표명 : 2명(정석(도시계획), 이숙진(여성학)) - 업계 관계자 : 3명(백운수, 유나경, 여춘동)
<b>2013년 자문단 개편안</b>	<b>25</b>	- 시의원(3), 도시계획(8), 건축(6), 교통(2), 조경(1), 환경(1), 인문사회분야(4)
① 現 자문위원 연임	15	- 現 자문위원(총 20명) 중 15명 연임 - 도시계획 7, 건축 4, 교통 2, 환경 1, 미래학 1
② 자문위원 신규 위촉	10	- 시의원 3, 인문사회분야 1, 전문가 6명 추가 위촉
- 시의원 신규 위촉	3	- 시의회 추천 3명 : 김형식, 김정태, 이경애
- 인문사회분야 신규 추가	2	- 2030 서울플랜 인문사회분야 자문위원 중 2명 위촉 (전효관 서울하자센터장,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교수)
- 전문가 신규 추가	5	- 전문가 추가 위촉 · 이정형(중앙대), 이인성(서울시립대), 강우원(세종사이버대), 이강오(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), 배형민(서울시립대)

□ 분과자문단 및 실무지원반 구성 및 역할

○ 분과자문단 구성 및 역할

- 분과자문단 구성 안건 : 자문단 전체회의에서 결정
- 인원 구성 : 정책자문단 위원 및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Pool(497명) 활용하여 추가 구성·운영(분과별 구성원 : 5명 내외)
- 분과위원은 자문단 전체회의(‘13.10.25일 예정) 개최시 희망 분과 선택후 구성
- 주요 역할 : 도시계획 관련 주요 현안이슈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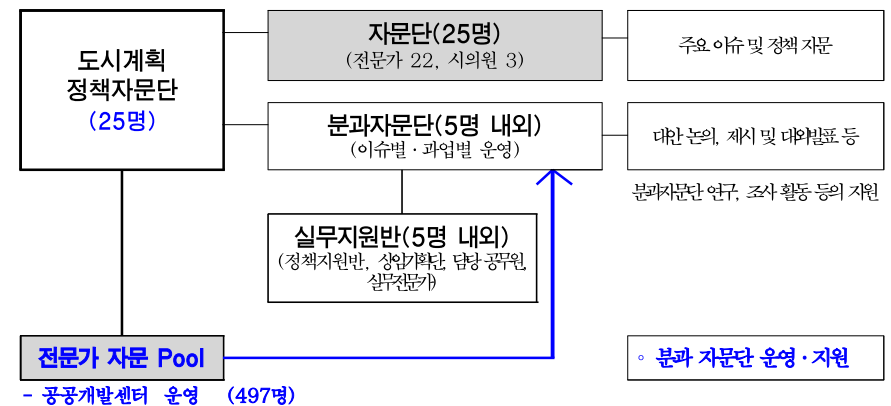
○ 실무지원반 구성 및 역할

- 실무지원반 구성 : 분과별 구성·운영(분과별 구성원 : 5명 내외)
- 인원 구성 : 전문위원(도시계획과내 전문위원 활용), 상임기획단, 담당공무원, 실무 전무가 등 활용
- 역할 : 자문단 및 분과자문단의 주요 안건 및 자문단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관하여 조사·연구 활동 등의 지원

○ 정책지원반 구성 및 역할

- 정책지원반 구성 : 도시계획과내 전문위원으로 구성  
. 現 전문위원으로 구성·운영하되, 필요시 비전임계약직 총원
- 역할 : 자문단 및 분과·실무지원반 운영 총괄, 자문안건 사전 검토, 도시 기본계획 모니터링, 주요 정책(도시재생, 생활권계획 등) 연구·검토, 대외 발표자료 작성 등

□ 자문단 구성도(안)



## 2. 정책자문단 운영기준

### □ 자문단의 기능

- 시장이 부의한 주요 정책·계획·제도 등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자문
- 시대변화, 사회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이슈 제기
- 주요 이슈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조사, 연구 및 검토 등
- 도로, 철도, 녹지, 도시재생 등 공간정책 조율기능
  - 도시계획국의 내부적인 정책결정 사항뿐만 아니라 타 실국의 다양한 공간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 강화

### □ 자문과제 상정 "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차별화된 안건 상정"

- 원칙 및 기준차원 정책방향 자문
  - 주요 지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전에 마련되어야 할 원칙 및 정책방향
  - 사회적 이슈, 정책여건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등(예 : 도시계획현장 등)
- 공간계획 자문 (행정계획 성격)
  -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성격
  - 정책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용역사나 대안 마련 체계가 있으나 세부적으로 쟁점이 있는 사항(예 : 한강변 관리방향 등)
- 개별사업에 대한 자문 (도시관리계획 성격)
  - 관리계획의 성격을 갖는 개별사업이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초기단계에 자문을 받는 사항(예 : 공공개발센터 주요 사업 등)
- ※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자문사항
  - . 법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
  - .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·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
  - . 도시계획조례의 제정·개정과 관련하여 시·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

### □ 분과자문단 구성·운영과제

- 관련용역 등 검토체계가 없고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분과자문단 구성 운영
  - '12년도 분과자문단 안건(3건)
    - . 도시계획현장,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, 한강변 관리방향
  - '13년 이후 주요 분과자문단 구성 안건(예시)
    - . 생활권 계획수립, 도시재생 전략마련, 노선상업지역 관리방향, 도시미래관 건립
    - . 도시계획 법제 방향 등

### □ 자문단 세부 운영기준(안) ☞ 첨부 3

- 자문위원 임기 : 2년, 연임 가능
- 자문단 운영 주기
  - 전체회의(정례회의) : 매월 1회 둘째주 화요일 원칙
  - .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가능
  - 분과자문단 : 전체회의 및 분과자문단에서 별도 결정
- 수당 지급 : 수당,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

## IV 향후계획

- '13.10.25 : **新정책자문단 1차 회의 및 위촉식 개최** ☞ 첨부 2
  - 장소 : 간담회장(신청사 8층)
  - 주요내용 : 「도시계획 정책자문단」 위촉장 수여
  - 자문단 세부운영기준(안) 및 분과 자문단 구성(안) 보고
  - '12년 자문단 운영성과 보고 및 도시계획국 현안사항 보고

첨부 1 : 2013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구성(안)

첨부 2 : 「도시계획 정책자문단」 1차 회의 개요

첨부 3 :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세부 운영기준(안)

첨부 4 :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. 끝.

첨부 1

**2013 도시계획 정책지문단 구성(안) - 25명(조표 : 정원 25~30명)**

- ① **現 자문위원 연임 : 15명**(도시계획 7, 건축 4, 교통 2, 환경 1, 미래학 1)
  - 現 자문단 구성 : 20명(도시계획 8, 건축4, 교통 2, 업계 3, 환경·미래학·여성학 3)
  - 해촉 위원 : 5명(도시계획 1(사의), 여성학 1(사의), 업계 3)
- ② **신규 위촉 : 10명**(시의원 3, 도시계획 1, 건축 2, 조경 1, 인문사회분야 2)
  - 시의원 신규 위촉 : 3명(김형식·김정태, 이경애)
    - 사유 : 자문단의 대표성 강화
    - 김형식(위원), 김정태(위원), 이경애(위원)
  - 인문사회분야 신규 위촉 : 2명
    - 사유 : 문화·미래·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필요
    - 전효관(문화), 김환석(사회학) : 2030 서울플랜 인문사회분야 자문위원
  - 전문가 신규 추가 위촉 : 5명
    - 이정형(중앙대), 이인성(서울시립대), 강우원(세종사이버대), 이강오(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), 배형민(서울시립대)

구 분	인원	비 고
現 자문위원 구성 현황	20	- 도시계획(8), 건축(4), 교통(2), 업계(3), 환경(1), 미래학(1), 여성학(1)
現 자문위원 중 해촉	5	- 사임의사 표명 : 2명(정석(도시계획), 이숙진(여성학)) - 업계 관계자 : 3명(백운수, 유나경, 여춘동)
<b>2013년 자문단 개편안</b>	<b>25</b>	- 시의원(3), 도시계획(8), 건축(6), 교통(2), 조경(1), 환경(1), 인문사회분야(4)
① 現 자문위원 연임	15	- 現 자문위원총 20명 중 15명 연임 - 도시계획 7, 건축 4, 교통 2, 환경 1, 미래학 1
② 자문위원 신규 위촉	10	- 시의원 3, 인문사회분야 1, 전문가 6명 추가 위촉
- 시의원 신규 위촉	3	- 시의회 추천 3명 : 김형식, 김정태, 이경애
- 인문사회분야 신규 추가	2	- 2030 서울플랜 인문사회분야 자문위원 중 2명 위촉 (전효관 서울하자센터장,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교수)
- 전문가 신규 추가	5	- 전문가 추가 위촉 · 이정형(중앙대), 이인성(서울시립대), 강우원(세종사이버대), 이강오(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), 배형민(서울시립대)

① 現 자문위원 연임 : 15명(도시계획 7, 건축 1, 교통 2, 환경 1, 미래학 1)

성명(연령)	분야	현 직 위 (직 위)	주요경력 및 학력	연락처	비고
김기호(60)	도시 계획 (역사)	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	· 아헨공과대 도시공학 박사	HP)011-9138-2436 keyhow@uos.ac.kr	
조명래(57)	도시 계획 (NGO)	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교수	· 한국 엔지오학회 회장 · 한국 인간도시 컨센서스 대표 · 환경정의 공동대표 ·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	HP)010-4320-5503 mrcho55@komet.net	
구자훈(53)	도시 계획 (토지 이용)	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	· 서울대 도시공학 박사 · 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·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 연구위원 ·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	O)02-2220-0339 HP)010-2058-0339 jhkoo @hanyang.ac.kr	
최막중(52)	도시 계획 (토지 이용)	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	· 하버드대 도시계획학 박사 ·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	HP)010-3330-0338 macks@snu.ac.kr	
변창흠(48)	도시 계획 (행정)	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	·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· 서울시 DMC MA위원·실무위원 · 국가균형위 및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위원 · 중앙 및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객원교수 ·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분야 전문위원(현)	O)02-3408-3148 HP)011-442-7451 changbyeon@sejong.ac.kr	
김갑성(48)	도시 계획 (경제)	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	· 펜실베이니아대 지역경제학 박사 ·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· 국토부 신도시 자문위원회 위원	O)2123-2893 HP)010-2354-0578 kabsung@yonsei.ac.kr	
임희지(46)	도시 계획 (시장연)	시정개발 연구원 연구실장	· 서울연구원 연구실장	HP)010-5034-6852 heeji@si.re.kr	
강병근(60)	건축 (도시 설계)	건국대 건축설계학과 교수	· 베를린공대 건축학 박사 · 한국복지시설학회 이사 ·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	HP)010-5224-0564 prof-k@hanmail.net	
송인호(56)	건축 (역사)	시립대 건축학과 교수	· 서울대 건축학 박사 · 이탈리아 국립페렌체대학 초청연구원 · 삼정건축 근무	O)2210-2742 HP)010-6226-5166 inos@uos.ac.kr	

성명(연령)	분야	현 직 (직 위)	주요경력 및 학력	비고	비고
 신중진(52)	건축 (주 택)	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	·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·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	HP)010-8834-9241 jjshin@skku.edu	
 김세용(47)	건축 (NGO)	고려대 건축학과 교수	· 칼럼비아대 건축학 박사 ·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	HP)010-4605-9716 kksy@korea.ac.kr	
 손기민(43)	교통	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	· 서울대 도시공학 박사 ·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	O)820-5850 HP)016-305-8192 kmsohn@cau.ac.kr	
 윤혁렬(47)	교통	시장개발 연구원 연구위원	· 서울대 공학 박사 · 시정연 교통시스템연구실 실장	O)2149-1111 HP)010-3732-9927 yoonhr@si.re.kr	
 김은희(47)	환경	도시연대 사무처장	· 인하대 독문과 졸업 · 녹색교통운동 조직부장 · 견고실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처장	O)735-6046 HP)010-8706-8598 gsg11011@hanmail.net	
 전상인(54)	미래학	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	· 미국 브라운대 사회학박사 ·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·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· 한국 미래학회 회장	O)880-9390 HP)010-7195-5876 sangin@snu.ac.kr	

- 전문가 신규 추가 위촉(안) : 5명(도시계획 1, 건축 2, 조경 1, 인문사회복지 1)



성명(연령)	분야	현 직 (직 위)	주요경력 및 학력	연락처	비고
이정형(49)	건축 (도시 설계)	중앙대 건축학부 교수	·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·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·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	O)02-820-5341 HP) jhlee@cau.ac.kr	
강우원(53)	도시 계획 (부동산)	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경영학부 교수	·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·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	O)02-2204-8015 HP) kangww@sjcu.ac.kr	
이인성(57)	조경 (도시 설계)	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	· 서울시 공원위원회 위원 ·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· 용산국가공원 추진위원회 위원	O)02-2210-2744 HP)	
배형민(52)	건축 (역사)	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	·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·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	O) 02-6490-2773 HP) 010-4127-2441 pai@uos.ac.kr	
이강오(45)	인문 사회 복지	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	· 서울시 공공조경가 ·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	O)02-498-7432 HP) sgt@sgt.or.kr	

② 신규 위촉 : 10명(시의원 3, 인문사회분야 2, 전문가 5)

- 시의원 : 3명(김형식(시도시계획위원회), 김정태(도시건축공동위원회), 이경애 의원)

- 인문사회분야 신규 위촉(안) : 2명

· 2030 서울플랜 인문사회분야 자문위원 : 김환석(사회학), 전효관(문화)

연번	분야	성명	현 직	주요 경력	연락처
1	사회학	 김환석(58)	국민대 사회학과 교수	· 영국 임페리얼대 사회학 박사 · 한국과학기술학회 부회장 ·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	<a href="mailto:kimhs@kookmin.ac.kr">kimhs@kookmin.ac.kr</a> 910-4475 010-3243-4976
2	문화	 전효관(47)	서울하자 센터 센터장	· 연세대 사회학 박사 ·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·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· 문화연대 집행위원(현)	<a href="mailto:9junk@hanmail.net">9junk@hanmail.net</a> 010-3240-9279

※ 現 2012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중 해촉 위원 대상자 - 5명

성명(연령)	분야	현 직 위 (직 위)	주요경력 및 학력	연락처	비고
정 석(50)	도시 계획 (공동체)	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</li> <li>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연구팀장</li> <li>대통령 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</li> <li>한국주택학회 회장</li> <li>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</li> </ul>	O)031-750-8766 HP)010-4027-2409 jerome@kyungwon.ac.kr	시임 의사 표명
이숙진(47)	여성학	젠더 사회연구소 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화여대 여성학 박사</li> <li>한국문화연구원 프로젝트연구원</li> <li>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지학 교수</li> <li>대통령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</li> </ul>	HP)010-3268-1889 leesjdream@hanmail.net	시임 의사 표명
백운수(60)	업 계	미래이앤디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</li> <li>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심사위원장</li> <li>국토해양부 중앙건설기술심의회 위원</li> <li>한국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</li> </ul>	HP)010-9767-5846 mrcity@chol.com	(사의회 지적사항-업체)
유나경(44)	업 계	코레스 도시환경 연구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울시립대 도시공학 박사과정 수료</li> <li>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연구부 근무</li> <li>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</li> </ul>	O)561-5711 HP)010-4248-0636 nkyou71@hanmail.net	(사의회 지적사항-업체)
여춘동(46)	업 계	인토ENG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원대 도시공학 박사</li> <li>중랑구 도시계획위원</li> <li>경호엔지니어링 이사</li> </ul>	O)424-9835 HP)010-4248-9905 goodycd@hanmail.net	(사의회지적사항-업체)

첨부 2

**「도시계획 정책자문단」 위촉 및 1차 회의**

□ 행사개요

- 일시·장소 : '13.10.25(금), 14:00~16:00, 간담회장(신청사 8층)
- 참석자 : 총 32명
  - 행정2부시장, 정책특보, 도시계획국장, 도시관리정책관, 정책보좌관, 도시계획과장, 상임기획단장
  -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위원 (25명)
- 주요내용
  - 「도시계획 정책자문단」 위촉장 수여
  - '12년 자문단 운영성과 보고 및 도시계획국 현안업무 보고
  - 자문단 세부운영기준(안) 및 분과 자문단 구성(안) 논의 등
  - ※ 분과 자문단 안건(예) :
    - 도시현장, 용산공원 주변, 고도지구, 동남권 MICE단지, 동북4구 발전방안, 생활권계획, 도시재생, 도시미래관 등

□ 진행계획(안)

시 간	내 용	비 고
14:00~14:05 (05')	▶ 개회 및 안내	사 회 (도시계획과장)
14:05~14:10 (05')	▶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	사 회 (도시계획과장)
14:10~14:15 (05')	▶ 부시장 인사말씀	행정2부시장
14:15~14:20 (05')	▶ 자문단장 선임 및 인사말씀	이후 자문단장 회의 진행
14:20~15:00 (40')	▶ 운영 성과 및 현안업무 등 보고 - '12년 자문단 운영 성과 보고 - '13년 자문단 세부운영기준(안) 보고 - 도시계획국 현안업무 보고	도시계획과장 보고
15:00~15:50 (50')	▶ 안건별 논의 - 분과 자문단 구성 및 향후 일정 논의	자문단장
15:50~16:00 (10')	▶ 마무리	자문단장



#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세부 운영기준(안)

(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)

**제1조(목적)**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의2(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 등) 규제에 제5항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」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.

1. 시장이 부의한 주요 정책·계획·제도 등 다양한 현안 문제
2. 시대변화, 사회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이슈 제기
3.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, 연구 및 검토
4. 그 밖에 자문단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·운영)** ① 시장은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·운영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설치·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.

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.

③ 자문위원은 도시경관·도시설계·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·미래·역사·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제3항의 제1호(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)와 제3호(도시계획관련 전문가)에 해당되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

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자문위원이 중도사퇴, 품위손상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⑥ 위원장은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, 자문단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⑧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⑨ 자문단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, 간사는 자문단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, 서기는 자문단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.

⑩ 자문단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**제4조(분과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)** ① 자문단은 주요 이슈 및 쟁점이 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과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② 시장은 분과자문단 활동과 계획수립 과정을 총괄·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단의 위원 중에서 분과별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, 분과위원장은 분과자문단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분과자문단의 위원은 자문단의 위원과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공공개발센터의 전문가 Pool 중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, 분과자문단의 정원은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④ 분과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5조(실무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)** ① 도시계획조례 제6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효율적인 자문단의 운영 및 실무지원을 위해 분과별로 실무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지원반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, 담당 공무원, 외부전문가, 전문위원 등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③ 실무지원반은 자문단 및 분과자문단의 주요 안건 및 자문단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관하여 조사·연구·검토 등을 실시하여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등에 보고해야 한다.

**제6조(전문위원)** ① 도시계획조례 제6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전문위원의 사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

1. 자문단 회의개최 등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
2. 자문단 안건 사전 검토 및 행정적인 사항
3. 위원장 업무보좌에 관한 사항
4. 자료의 수집·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사항
5. 분과자문단 및 실무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7조(회의)**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, 전체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, 둘째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할 경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나 시장의 요청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③ 분과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, 부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자문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자문단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
의결한다.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.

**제8조(주민 설명회 등 의견수렴)** ① 자문단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일반시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②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9조(수당 등)**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,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시도시계획위원회 보고)** ① 자문단은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 등 중요한 도시계획 정책사항에 대하여는 최종 의사결정 전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0조 제1항의 중요한 도시계획 정책사항의 대상여부는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의결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1조(위원의 제척 및 회피)** ① 자문단 및 분과자문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1.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**제12조 (회의록)**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고, 회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3조 (수당 등)**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자문단 및 분과자문단, 실무지원반 위원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4조 (운영세칙)** 이 자문단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첨부 4

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

도시계획조례 현 행	도시계획조례 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63조의2(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 등) 시장은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·운영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.</p> <p>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.</p> <p>② 자문위원은 도시경관·도시설계·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·미래·역사·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제57조 제3항의 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, 실무지원반,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</p> <p>④ 제57조제4항부터 제10항, 제58조의 2, 제62조의 규정은 자문단의 운영에 준용한다.</p> <p>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